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00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의 강소기업 육성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소기업 정의에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를 추가하고,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강소기업선정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심의대상 추가, 위원정수 확대를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나. 강소기업 정의에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를 추가함(안 제2조).
- 다. 강소기업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신설함(안 제5조 제2항·제3항).
- 라. ‘강소기업선정위원회’를 ‘강소기업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7조, 제8조).
- 마. 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바. 청년으로 한정된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일반화함(안 제12조).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서울형강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종합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종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 시장은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7조 조명과 본문 중 “강소기업선정위원회”를 각각 “강소기업지원위원회”로 한다.

안 제8조 중 “11명”을 “30명”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조의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2.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지원
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
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3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5조제2호 중 “다른 지역으로”를 “타 시·도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u>서울형강소기업</u>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u>강소기업</u>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서울형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이라 한다)이란 규모는 작지만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종합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종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강소기업선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강소기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강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p> <p>2. 제5조의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청년친화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p> <p>2. ~ 3. (생략)</p> <p>4.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p> <p>5. 청년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p> <p>6. (생략)</p>	<p>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p> <p>2. ~ 3. (제정안과 같음)</p> <p>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p> <p>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p> <p>6. (제정안과 같음)</p>

<p>제13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해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u>예산의 범위 내에서</u>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3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해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u>예산의 범위에서</u>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 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5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채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u>다른 지역으로</u> 이전한 경우 <p>3.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5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채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u>타 시·도로</u> 이전한 경우 <p>3. ~ 4.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소기업의 선정·육성·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종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강소기업 선정) 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성

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강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을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2.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지원
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
5. 구직자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해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인증기간) 제13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제15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채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 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채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강소기업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도 취소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강소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지원·평가·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가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거나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 및 인증된 것으로 본다.